


의정활동보고서



제300회 임시회(2018. 6. 19 ~ 6. 26)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0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 우리 도의회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3백만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락을
함께 해온 동료의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그리고 안타깝게도 뜻을 이루지
못한 의원님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3선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북도청 이전, 일자리 창출, 참된 인재 육성 등 큰 발자취를 남기신 두 분께 3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4년 전 우리는 도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지역사회의 발전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열성을 다 바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처리한 총 883건의 안전 중 의원발의 조례 진수가 289건으로서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경상북도 산하기관 인사검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4년간 의원님들께서 뿌린 땀방울은 우리 옹도경북 발전의 든든한 초석이 되고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미래 먹거리 창출, 인구 감소 대응, 도민 안전 구현, 지방분권 실현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국제무역

장벽 등의 큰 변화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런 문제들은 제11대 도의회에 넘겨주면서 잘
대응해 주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안동, 영천 등 도내 일부 지역에 갑작스러운 우박과
돌풍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절기를 앞두고
집중호우 등이 예상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과 복구 그리고 피해보상 등을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3백만 도민 여러분.

이제 제10대 경상북도의회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하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오는 7월부터 임기가 시작
되는 제11대 도의회에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및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백만 도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9일

경상북도의회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고 우 현

차 례

I. 개	황		9
II. 의사일정			10
III. 의안처리			15
IV. 민원처리			16
V. 본회의 보고사항			18

부 록

□ 조	례	안(6건)		23
□ 규	칙	안(2건)		115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300회 임시회는 2018년 6월 19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26일까지 8일간의 회기동안 2차의 본회의와 4회에 걸친 상임위원회 및 6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6월 19일(화) 14시에 개의하여 일반사항 보고를 마친 후, 『제30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화)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기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가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하는 회기가 되었다.

다음 회기는 제301회 임시회로 2018년 7월 5일 14시에 개의를 약속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8년 6월 19일(화) 14:00

2. 회 기

- 가. 회의기간 : 2017년 6월 19일 ~ 6월 26일(8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78회)
 ○ 위원회

(단위 : 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정 보건 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10	1	1	-	1	-	-	1	-	6
누 계	400	32	49	50	42	37	39	44	60	47

※ 누계는 제10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화) 14:00 (제1차)	☐ 안전처리 ○ 제30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6. 26.(화) 11:00 (제2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의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2017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결산감사 결과 보고의 건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화) 14: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화) 15:4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화) 14:30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화) 15:5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화) 15:00 (제1차)	☐ 안전처리 ○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화) 11:30 (제1차)	☐ 안전처리 ○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진대책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화) 15:0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화) 11:40 (제1차)	☐ 안건처리 ○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화) 11:10 (제1차)	☐ 안건처리 ○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6. 19.(화) 11:35 (제1차)	☐ 안건처리 ○ 경상북도의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Ⅲ. 의안처리

※ ()안은 제10대(제271회~제300회) 의회 누계

구 분		접수 ㉠+㉡+㉢	처리 ㉠+㉡	의결					철회 ㉡	폐기 ㉢	비고
				계 ㉠	가 결		부결	폐안			
					원 안	수 정					
계		18 (882)	18 (872)	17 (862)	16 (788)	1 (71)	0 (3)	0 (0)	1 (10)	0 (10)	
조 례 안	소 계	7 (551)	7 (543)	6 (535)	5 (489)	1 (43)	0 (3)	0 (0)	1 (8)	0 (8)	
	의회 제안	1 (315)	1 (308)	1 (302)	1 (287)	(15)			(6)	(7)	
	도지사 제출	5 (166)	5 (165)	4 (163)	3 (142)	1 (21)			1 (2)	(1)	
	교육감 제출	1 (70)	1 (70)	1 (70)	1 (60)	(7)	(3)		(0)	(0)	
	규 칙 안	2 (8)	2 (8)	2 (8)	2 (8)					(0)	
예산·결산		0 (35)	0 (35)	0 (35)	(20)	(15)					
동의·승인		0 (81)	0 (79)	0 (79)	(66)	(13)				(2)	
건의안		0 (2)	0 (2)	0 (2)	(2)						
결 의 안		6 (62)	6 (62)	6 (62)	6 (62)						
기 타 안		3 (143)	3 (143)	3 (141)	3 (141)				(2)		

IV. 민원처리

1. 청 원

(단위 : 건)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10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정	사회 문화	교통	건설	교육	경제	환경	농어업	기타
계	(108)	(46)	(11)	(2)	(25)	(6)	(8)	(5)	(2)	(3)
의 회 운 영	(2)	(2)								
기 경 획 제	(9)	(3)					(6)			
행 정 보 건 보 지	(22)	(16)	(4)		(1)		(1)			
문 화 환 경	(15)	(5)	(7)					(3)		
농 수 산	(6)	(3)					(1)		(2)	
건 설 소 방	(41)	(11)		(2)	(24)			(2)		(2)
교 육	(12)	(5)				(6)				(1)
특 위 원 회	(1)	(1)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단위 : 건)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2 (108)	2 (107)	(1)			
의 회 운 영	(2)	(2)				
기 획 경 제	1 (9)	1 (9)				
행 정 보 건 복 지	(22)	(22)				
문 화 환 경	1 (15)	1 (15)				
농 수 산	(6)	(6)				
건 설 소 방	(41)	(40)	(1)			
교 육	(12)	(12)				
특별위원회	(1)	(1)				

※ ()내는 제10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안건 접수 : 18건(조례안 7, 규칙안 2, 결의안 6, 기타안 3)

2. 처리 의안 : 18건

○ 가결 의안 : 17건(조례안 6, 규칙안 2, 결의안 3, 기타안 3)

○ 철회 의안 : 조례안 1건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6. 19. 철회)

3. 의안접수 내용

○ 조 례 안 : 7건(원안가결 5, 수정가결 1, 철회 1)

연번	접수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 고
1	'18. 6. 8.	도 지 사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2	"	도 지 사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	도 지 사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	도 지 사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5	'18. 6. 11.	교 육 감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18. 6. 19.	의회운영 위 원 장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18. 6. 8.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 규 칙 안 : 2건

연번	접 수 일	발 의 자	안 건 명	비고
1	'18. 6. 19.	의회운영 위 원 장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	"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결 의 안 : 6건

연번	접 수 일	제 출 자	안 건 명	비고
1	'18. 6. 19.	독도수호 특별위원장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	"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	"	대구공항이전 특별위원장	경상북도의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4	"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5	"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장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상생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6	"	지진대책 특별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지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기 타 안 : 3건

연번	접 수 일	제 출 자	안 건 명	비고
1	'18. 6. 19.	의장	제30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	"	휴회의 건	

4.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 : 8건

연번	이 송 일	이 송 처	안 건 명	공 포 일
1	'18. 6. 26.	경상북도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18. 7. 12. (제4081호)
2	"	"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제4083호)
3	"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084호)
4	"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4082호)
5	"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085호)
6	"	경상북도 교 육 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4086호)
7	"	경상북도 의 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8. 7. 2. (제33호)
8	"	"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제34호)

부 록

□ 조 례	안(6건)	23
□ 규 칙	안(2건)	115

二 조 례 안 二

-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도지사('18. 6. 8.)
-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18. 6. 8.)
-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18. 6. 8.)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18. 6. 8.)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18. 6. 11.)
-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18. 6. 19.)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고 우 현

2018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

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 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고 우 현
2018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도민들에게 공개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
절약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절약 및 예산낭비 사례
2.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도민의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 도지사는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 및 임무)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공개 모집하며,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시장·군수로부터 생활공감 모니터단, 주민참여 예산위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감시단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며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③ 단원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도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안자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예산낭비 등 심사) ① 도지사는 예산절약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행한다.

제11조(성과금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상북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고 우 현
2018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여 성 가 족 정 책 관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보고의 접수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군수
사회재난과	1.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2.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제28조	시장·군수
중 소 벤 처 기 업 과	1.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 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 환불·수리 등 이행명령 권한 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제출·보고명령·출입· 검사·통지 및 질문 권한 2.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표, 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생 활 경 제 교 통 과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시장·군수
	2.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시장·군수
	3. 자동차등록판 제작, 발급 및 봉인	같은 법 제19조	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자의 지정 등	같은 법 제20조	
	5.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	같은 법 제21조	시장·군수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같은 법 제27조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같은 법 제7조	시장·군수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같은 법 제7조제3항	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7조제4항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같은 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같은 법 제9조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 봉인 및 재발급	같은 법 제10조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같은 법 제10조제6항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11조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같은 법 제12조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생 활 경 제 교 통 과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같은 법 제13조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 차의 인정	같은 법 제13조제1항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같은 법 제13조제8항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발급	같은 법 제13조제9항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같은 법 제14조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같은 법 제16조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같은 법 제28조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 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 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4. 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25. 자동차 정기검검 기간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2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 조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시장·군수
	27.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4조	
	28. 체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29.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같은 규칙 제8조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30.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같은 규칙 제20조제3항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 차 사용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 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생 활 경 제 교 통 과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3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나.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다. 과태료 부과징수 34. 일반·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5.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 노선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36.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사업면허 나. 공사시행인가, 인가신청 기간 연장, 공사완료시설 확인 다. 사용개시 신고수리 라. 사용약관 신고수리 마. 시설사용료 인가 바. 사업자 금지행위 중지 명령과 구조·설비의 시정 명령 사.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변경인가와 변경신고 수리 아. 개선명령 자. 사용명령 차. 공사시행인가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확인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및 통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3조2항 (같은 법 제89조 준용) 같은 법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규칙」 제46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생 활 경 제 교 통 과	카.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4조 준용)	시장·군수
	타. 상속신고수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5조 준용)	
	파. 휴업·폐업허가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6조 준용)	
	하. 보고·검사 등	같은 법 제79조	
	거. 면허·인가·허가의 취소 및 사업 정지 처분 등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너. 청문	같은 법 제86조	
	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리.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37.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 부터 제6항	
	38. 도난차량 말소등록	같은 법 제13조제7항	
	39.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 자동차관할) 시장·군수
	40.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		
	41. 노선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등록대상 사업에 한함)		
	가. 사업등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단서조항)	
	나. 수송시설확인, 운송개시기일 연기 또는 개시기간 연장승인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요금 신고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 수리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 수리, 사업계획 변경 제한	같은 법 제10조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생 활 경 제 교 통 과	바. 사업관리위탁 신고수리 사. 사업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양도·양수 인가 제한, 법인 합병 신고수리 아. 상속 신고수리 자. 사업휴지 또는 폐지허가, 신고수리 차. 중대한 교통사고 보고수리 및 처리 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개선 명령 타. 차령연장 파. 사업등록의 취소, 정지명령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 하는 사업 계획변경 명령 하. 청문 거.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너. 과태료 부과·징수 42.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대여약관 및 약관변경 신고 수리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라. 사업개선명령 마.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수리 바. 상속신고수리 사. 차령연장 아. 등록취소, 정지 명령, 사업 계획 변경 명령 자. 청문 차.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카. 과태료부과·징수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65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제14조제1항, 제3항 준용) 같은 법 제35조 (제15조제1항 준용)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제88조 같은 법 제94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생 활 경 제 교 통 과	43.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44.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 승인 45. 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46.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47.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 또는 수입에 따른 내용기재 서류 접수 나.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다. 계량기의 수리 및 자체수리 라.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 (수리)검사 마. 정기검사의 증인 표시 바. 보고 및 검사 등 사. 개선명령 아. 부정계량기의 처리 자.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차. 청문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48.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등록갱신, 등록증 반납 등 나. 대부업 변경등록 및 폐업 신고 수리 등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6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 2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제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조3, 제2조의4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생 활 경 제 교 통 과	다.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라. 둘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 설치한 경우 필요시 관할 시·도지사에게 영업소 검사 (공동검사 포함) 요청 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바.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사. 대부업자 등의 보고서 제출 아. 영업정지 자.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차.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미리 사실통보 카. 대부업자의 실태조사 등 다. 등록수수료 파.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4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 사업자 및 판매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2항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2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같은 법 제13조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제18조의8 같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사 회 적 경 제 과	1. 협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나. 협동조합 정관변경 신고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라. 협동조합 해산신고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바. 신고필증 교부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다음의 사무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및 공정위 사실통보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 변경인가 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홍보 기간 접수 라. 보건·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개설 신고 마. 조합 해산 신고 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감독 사. 설립인가 취소 및 취소사실 통보 아. 청문 자. 과태료 부과·징수	「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53조제2항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88조제4항	시장·군수
국 통 상 과	1. 시·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제1항	시장·군수
자 치 행 정 과	1. 2급 및 3급의 비밀취급의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0조제2항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회 계 과	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도유일반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 관리 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제외) 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도유재산 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 한 일반재산의 처분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같은 조례 제64조 같은 조례 제3조	시장·군수
문 화 예 술 과	1.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시장·군수
문 화 용 성 사 업 단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신고수리 및 신고증 교부 나. 변경신고 수리 및 신고증 갱신교부 다. 폐업신고 수리 및 직권말소 라.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처분, 영업 정지명령, 시정조치 및 경고조치 마. 영업소폐쇄 및 음반 등의 수거·폐기 바. 청문 사. 수수료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농 업 정 책 과	1.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 (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권)	「농지법시행령」 제58조	시장·군수
FTA농식품 유통대책단	1.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나. 시료 수거 등 다.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라. 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123조	시장·군수
친 환 경 농 업 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통지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식물방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농약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군수
농 촌 개 발 과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어촌정비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	시장·군수
축 산 경 영 과	1.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2.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휘·감독 3.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보고서 청구 4.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5.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6. 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축산법」 제8조제1항 「수의사법」 제21조 같은 법 제37조 「축산법」 제1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8조 「동물보호법」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2항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1. 대기오염,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관계기관 협의 5.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 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7.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제4호, 제7호는 도에서도 병행) 8.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업무 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사업계획검토, 사업계획 적합 및 사업계획 면제대상 허가여부 통보 포함)의 허가·변경허가(변경 허가 여부 통보), 기타 필요한 조건부여, 영업구역 결정·제한, 허가신청기간 연장, 허가증 교부, 임시보관시설 승인(변경승인), 수집·운반증 발급(임시차량 사용 인정), 보관량 및 보관기간 초과 승인(인정), 폐기물 재위탁 승인, 폐기물처리업 기준 제외 인정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 「소음·진동관리법」 제5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의 제1항제7호, 제8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4항제5호, 제6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7,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시장· 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 과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납부(시군수입) 및 가중·감경, 제납 처분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폐기물처리 확인 사. 폐기물처리신고, 변경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 처분(폐쇄명령, 폐기물처리 금지명령) 등 아. 폐기물 처리기간 예외인정 자. 처리능력 2톤/시 이상 소각 시설의 계량시설 미설치 인정 차.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의 계량 시설 및 세륜·세차 시설 미설치 인정 카. 관리형매립시설에 대한 유사 차수 시설 인정 타. 매립되는 지정폐기물외의 폐기 물이 침출수 발생이 없거나 발생하는 침출수가 항상 기준 이하로 배출 인정 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온도 지시계 등 계측장비의 비정상 작동 인정 하. 매립시설 주변 수질검사결과 보고 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환경 영향 조사 결과 보고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제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의2, 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제3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59조, 제59조의2 같은 법 제46조제1항, 제3항,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별표 9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 과	너. 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 신청 및 권리자에 통보 더. 매립시설 검사기관이 실시한 안정성 검토성적서의 제출 러.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전산입력 등 머.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 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등 결정 버. 폐기물처리업자, 공제조합 등에 방치 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변경명령), 처리 이행 보증금의 정산, 처리 명령의 연기 등 서.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보험금의 수령, 계약, 보험 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 등 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저. 권리의무승계신고의 수리 처. 사업장,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완화 및 보관기간 예외인정, 재활용시설 기준 완화 인정 커.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의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의 이용에 대한 인정 터. 의료폐기물(인체조직과 동물의 사체)의 공설묘지중 매장할 수 있는 장소 인정,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 같은 법 제40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10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2조, 제23조 같은 법 제40조제8항,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제32조제3항 같은 법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제66조 별표 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별표 5의2 제2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 과	바. 과징금의 처분 등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 신고) 아. 승인서 및 신고필증 교부 자.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사용 신고 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카. 개선기간 연장, 완료보고 및 사용 중지 명령 철회 다.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파. 권리·의무의 승계 등 하. 휴·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및 보고 검사, 폐기물처리 확인·점검 등 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접수, 보험금수령 등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더.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행정대집행 및 처리 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공제 조함과 협의 등 러. 청문 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수집·운반차량 부착 또는 표기크기 조정, 장기 보관 필요성 인정, 건설오니, 폐토석 등 재활용에 따른 중간처리기준 인정 버. 행정처분기준 감경 등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제30조제3항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제41조,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같은 법 제43조, 제45조 같은 법 제45조, 제4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의2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별표 3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 정 정 책 과	12.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다. 공회전 단속업무 1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14. 고형연료제품의 제조자와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가. 고형연료제품공급계획서 접수 나.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의 고형 연료 제품 사용신고 다. 다이옥신 배출기준 초과에 따른 통보 및 개선사항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 관한 조례」 제10조 같은 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같은 법 제59조, 동조례 제10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6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 및 별표 8	시장·군수
환 안 전 과	1. 배출시설별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등 2.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3~5종 사업장 중 다음사항 (다만, 동일 사업장에 대기, 수질이 복합으로 설치된 사업장 중 1개 사업 이라도 사업장 1~2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 경 안 전 과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 수리 다. 측정기기의 부착 및 필요한 조치명령 등 라.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마.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바.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사.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조정 및 징수유예 등 아.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의 취소 배출시설의 폐쇄 및 조업정지 명령 자.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차. 과징금 부과 3. 연료의 공급·판매·사용의 금지 또는 조치명령 등 4.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 5. 청정연료의 사용 등 6.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7.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8.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10.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제45조 같은 법 제82조의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같은 법 제85조 같은 법 제94조 「물환경보존법」 제15조제3항, 제4항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 안전과	11. 하천·호소 구역안 특정농작물의 경작 권고 12. 하천·호소 수질오염 경보제 시행 13. 오염된 공공수역 행위제한 권고에 따른 조치 14.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같은 법 제19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의2 같은 법 제56조제1항, 제2항	시장·군수
물 산업과	1. 공공하수처리시설(동 시설에 직접 연결된 차집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 이외의 하수관거 설치인가 2. 공공하수처리시설외의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공사중지·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제25조	시장·군수
산림 자원과	1. 산림기술자 배치 2.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단,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 3.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단,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 가. 직원의 배치 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같은 법 제6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산 립 자 원 과	4. 보호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보호수 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호수에 대한 행위제한, 보호수가 자라고 있는 토지의 매수 또는 교환 등 5.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의 권한(경상북도 공유재산일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의 고시 등 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라.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6.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 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 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복구 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복구의무자 이의신청 접수 사. 복구의 대집행 등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산림보호법」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산림보호법」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산지관리법」 같은 법 제19조 및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산 립 자 원 과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에 따른 청문과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7. 산림사업법인에 관한 사항 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변경 등록 나. 산림사업법인의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 취소 등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9조 및 제5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제1항 부터 제3항	시장·군수
산림산업과	1. 가로수의 일반국도, 지방도 (시의 읍·면, 군지역) 관리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제2항	시장·군수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공 통 사 항	1.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 인가 (법인의 설립 목적과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 2.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임면 보고의 접수 3.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4. 사회복지법인 임시이사의 선임 5.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허가 6. 사회복지법인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보 건 정 책 과	1.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	「의료법」 제59조제1항	시장·군수
식 품 의 약 과	1.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2.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3.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증 갱신·재발급, 반납 4.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의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 5.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 자에 대한 판매승인 6.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7.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 8. 동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9. 마약류의 사고보고 10.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11.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12.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 력자 등 신고 수리 13.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14. 마약류 소매업자의 판매 보고 처리 15.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약사법」 제31조제5항 「약사법」 제45조제1항 「약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00조, 제103조 「약사법」 부칙 제4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29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3조제2항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1.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권한 가. 실시계획 승인 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 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준공 검사 및 공고, 보완시공 등 조치명령 사. 준공인가 전 사용 사전승인 아.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처분 협의 및 승인 자.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고지시 및 검사 차.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상기 가호부터 아호에 관한 권한) 카. 법 제13조의4에 의한 실시 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타. 산업단지계획 경미한 변경 중 다음 사항에 대한 변경의 의견 청취, 협의, 승인 및 고시 1)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 하는 경우 2)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제27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제2항 내지 제5항 같은 법 제37조제8항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0항 같은 법 제47조제1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16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15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따른 사업 시행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정정하는 경우 4) 사업시행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그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5)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이 주요 유치업종(제한업종) 및 업종별 배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5호	시장·군수 시장·군수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 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1호	시장·군수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2조 및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는 제외)
	3. 도시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및 고시 가. 도로(중로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관련 법상 도로관리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한함)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2만㎡ 미만 규모의 공원에 한함) 라. 주차장 마. 궤도 바. 시장 사. 공공청사 아. 수도공급설비 자. 하수도 차. 도축장 카. 방풍설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다. 사방설비 파. 방화설비 하. 방조설비 거. 연구시설 너. 문화시설 더. 사회복지시설 리. 공공직업훈련시설 머.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버. 광장(단, 교통광장은 중로 이하의 도로와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관련법상 도로관리 청이 시장·군수인 도로에 접한 광장에 한함) 서. 하천(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 어. 공공공지 저.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 처. 전기공급설비 커. 장례식장 터. 저수지 퍼. 가스공급설비 허. 방수설비 고. 유수지 노. 폐차장 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로. 청소년수련시설 모. 공동묘지 보. 화장시설 소. 봉안시설 오.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제외) 조. 폐기물처리시설 초. 자동차정류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코. 열공급설비 토. 방송·통신시설 포. 공동구 호.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구. 자연장지 누. 종합의료시설 두. 수질오염방지시설 4. 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의 변경결정 및 고시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고시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포함)·고시·협의권 및 서류의 공람 9.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및 공고와 협의권 10.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 11.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12.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 13.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개발 승인 14.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 15.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같은 법 제30조제5항, 제6항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88조, 제90조부터 92조 같은 법 제98조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같은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20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16. 선수금 승인 17.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18.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 19.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20.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21.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22.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23.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 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24.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25.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2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27. 청문 실시 28.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그에 따른 고시 29.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권한 및 위임된 사무중 협의로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을 의제하는 사무에 대한 협의 (단,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협의는 제외)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76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제1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39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31.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시송달 승인 32.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33.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계획인가(시장군수 시행사업 제외) 및 변경인가 3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보고, 공고 35.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및 보조금 등의 집행 잔액 사용인가 36. 감독 및 감사 등 37.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단, 330만㎡ 미만 사업) 38.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공공기관이외의 시행자에 한함) 39. 선수금의 수령 및 채권발행 승인 40. 감독(지정 또는 승인취소 제외) 41. 자료제출 및 보고받을 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도시개발법」(법률 제8970호) 부칙 제6조, 구 「도시개발법」(법률 제685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제47조, 제55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76조의2 같은 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 제78조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제1항 같은 법 제24조	시장·군수
도 로 철 도 공 항 과	1. 도로점용 등(국토교통부장관 관리 도로 제외) 2. 권한의 위임·위탁 3.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4. 공익을 위한 처분 5. 지방도상 타 공작물의 공사시행 6. 지방도상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도로법」 제61조 부터 제63조, 제66조, 제68조 부터 제70조, 제72조, 제74조 같은 법 제110조 같은 법 제96조 같은 법 제97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5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로 철 도 공 항 과	7. 지방도상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8.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9. 지방도의 공사와 유지·관리 등 10.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징수 11. 재해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2. 건설기계 등록 등 13.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4. 등록의 말소 15. 건설기계 등록원부 보관 16.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나.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변경 또는 폐지 다. 지방도 폐도에 대한사용, 수익허가 17.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 다음의 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나. 보상계획의 열람 등 다. 협의 라. 계약의 체결 마. 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재평가 등 바. 보상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 사.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 18. 미불용지의 평가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100조 같은 법 제8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도로법」 제8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44조의2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도 로 철 도 공 항 과	19.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등록번호표 재부착 20.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21. 등록번호표 반납 22.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및 새김명령 등 23. 건설기계의 폐기 24.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25.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청문, 행정처분, 보고검사 등 26. 지방도 교차방법과 다른시설의 연결 27. 원인자 부담금 28. 수수료의 징수 29. 과오납금 반환 30. 변상금의 징수 31. 과태료 32. 도유재산 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도유재산(행정, 일반)의 실태 조사 나. 도유행정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0조, 제11조 같은 법 제25조의2 같은 법 제34조의2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44조 「도로법」 제51조, 제52조 「도로법」 제91조 「도로법」 제103조 「도로법」 제94조 「도로법」 제72조 「도로법」 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및 「경상북도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시장·군수
건 축 디 자 인 과	1.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2.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주택법」 제24조 「주택법」 제16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건 축 디 자 인 과	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나.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 제1호 같은 법 제3조의2 제2호	시장·군수
하 천 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 2. 하천의 구조·시설 및 유지·보수 등의 기준 3.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4. 하천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 보관 5.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단, 하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 보수는 제외) 6. 하천관리청이 아닌자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 7. 하천의 점용 허가(법 제33조 제1항제3호의 공작물중 교량(세월교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 제외) 및 고시 8.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 9.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포함) 및 감면 10. 지방하천 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제한 11.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하천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67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하 천 과	12.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13. 같은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14. 하천관리원 임명, 위반사항조치 명령권한 15. 같은 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16.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17.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지정 및 고시 18.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 19.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20. 도가 시행하는 하천사업 편입 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21. 같은 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 22. 같은 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23. 지방하천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과태료 부과·징수 가. 제75조제2항 위반 타인토지 출입 나. 제46조제6호 및 7호 위반 행위 다. 제5조제2항 신고의무 위반 라.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 위반 마.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등에 대한 거부·방해 24. 도유 일반재산의 처분(하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양여 받은 폐천부지에 한함)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70조 같은 법 제72조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90조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제98조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시장·군수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하 천 과	25. 댐주변지역정비사업계획·변경 계획 수립 26. 하천편입토지보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상청구 나. 보상대상자의 결정 다. 보상금액의 산정 라. 보상금 지급의 통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시장·군수
에 너 지 산 업 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검사 등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3.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 제7항 같은 법 제40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전기사업법」 제71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시장·군수
해 양 수 산 과	1.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시장·군수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자 치 행 정 과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속기관내 전보권(단, 농업기술원의 본원과 연구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 2.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전보권(단, 과장급은 제외) 3. 연구사의 원내 전보권(단,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직속기관장 농 업 기술원장 보건환경 연구원장
소 방 행 정 과	1. 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소속 지방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호봉확정 및 승급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소방학교장, 소방서장
대 응 예 방 과	1.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나. 시험자의 등록신청, 등록증교부 다. 시험자의 등록취소, 공고, 등록증 회수 라. 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 신고 2.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항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변경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라. 과징금 처분 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같은 법 제16조제3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29조제3항	소방서장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자 치 행 정 과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직 포함)의 사업소내 전보권 (본소와 지소장은 제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사업소장
축 산 정 책 과	1.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검사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가축위생 시험소장 (지소장포함)
환 경 정 책 과	1.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업무 (팔공산도립공원구역에 한함)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 관리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 허가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마. 공원구역 원상회복 면제 승인, 예치비용관리, 원상 회복 조치 바.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 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 사.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아. 부당이득금의 징수 자. 금지행위의 단속 차.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카. 자연자원의 조사 타.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3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29조	팔공산도립 공원관리 사무소장

소 관 별	건 명	근 거 법 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파.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하. 대집행 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너. 허가에 관한 협의 더.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러. 공원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버. 주민지원사업 서.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어.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제72조 같은 법 제17조의2 같은 법 제73조 같은 법 제73조의2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팔공산도립 공원관리 사무소장
도로철도 공 항 과	1. 도로표지 정비 2. 지방도 접도구역내 도로변 휴게소 등 시설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의 3. 지방도 점용허가에 따른 협의 4.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신설연결허가 협의	「도로법」 제52조 「도로법」 제5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도로법」 제40조제1항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종합건설 사업소장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	：	：	：	：
해양수산 정책관	1.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시장 · 군수		〈삭제〉		
：	：	：	：	：	：	：	：
청정에너지 산업과	1.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업 자의 신고 등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 사용 검사 등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해임신고 등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정수 2.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등 나. 허가의 세부기준 설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제39조 제5항 같은 법 제39조 제6항, 제7항 같은 법 제40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제78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시장 · 군수		〈삭제〉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신설〉	〈신설〉			중소벤처기업과	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명령·출입·검사·통지 및 질문 권한 2. 파태료 부과·징수 3.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증자·개선·수거·파기의 명령·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 사실 공표·교환·환불·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나. 파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1조 제3항 제2호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시장·군수
일자리경제통단	1. ~ 48. (생략) 〈신설〉	(생략)	시장·군수	생활경제통과	1. ~ 48. (현행과 같음) 49.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및 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현행과 같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시장·군수
사회적경제과	1. (생략)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 판매업 및 후원방문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생략)	시장·군수	사회적경제과	1.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시장·군수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사회적경제과	가. 등록,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나. 직권 말소 다. 주소 변경 등의 공고 라. 위반행위 조사 등 마. 등록 취소 바. 과태료 부과·징수 3. 합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합부거래업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교부, 변경신고, 휴· 폐업 신고 나. 등록의 직권말소 다. 지위승계 신고 라. 이전계약 신고 마. 등록 취소, 청문 4. (생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제26조 제3항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9조 제5항 같은 법 제66조 제4항 「합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제3항 같은 법 제22조의2 제7항 같은 법 제40조 제2항, 3항 (생략)		사회적경제과	〈삭제〉		
⋮	⋮	⋮	⋮	⋮	2. (현행 제4호와 같음)	(현행 제4호와 같음)	
기업노사 지원과	1. 공산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 수거 또는 파기 명령 및 언론 매체 등을 통한 위해 사실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 이행명령 권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제31조	시장 · 군수		〈삭제〉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기업노사 지원과	나. 제조·수입·판매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명령· 출입·검사·통지 및 질문 권한 2. 과태료 부과·징수 3. 어린이제품 안전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판매중지·개선· 수거·파기의 명령 수거·파기의 이행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 공 표·교환·환불· 수리 기타의 사항 이행명령 나.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제41조 제3항제2호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34조			<삭제>		
글로벌 통상 협력과	1. (생략)	(생략)		국제 통상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	⋮	⋮	⋮
F T A 농식품 유통 대책단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 또는 조사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2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신설>	「농산물품질 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제38조	시장· 군수	F T A 농식품 유통 대책단	<삭제> <삭제> 1.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시장· 군수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F T A 농식품 유통 대책단					가. 농산물 등의 안전성 조사 나. 시료 수거 등 다.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라. 과태료 부과· 징수	「농산물품질 관리법」 제61조 같은 법 제62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123조	
⋮	⋮	⋮	⋮	⋮	⋮	⋮	⋮
환경 안전과	1. (생략) 2. (생략) 가. ~ 나. (생략) 《신설》 다. ~ 마. (생략) 바. 배출금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사. ~ 자. (생략)	(생략) (생략) (생략) 같은 법 제35조 (생략)	시장 · 군수	환경 안전과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측정기기의 부착 및 필요한 조치 명령 등 라. ~ 바. (현행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음) 사. 배출금부과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조정 및 징수유예 등 아. ~ 차. (현행 사목부터 자목까지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32조 (현행 다목부터 마목까지 같음)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현행 사목부터 자목까지와 같음)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82조의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5호	시장 · 군수
	3. ~ 6. (생략) 7. (생략) 8. (생략) 9. 과태료 부과·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94조 제2항제4호, 제7호 는 도에서도 병행)	(생략) 같은 법 제82조의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생략) 같은 법 제94조 제2항, 제3항제1호 부터 제8호의2. 제4항제1호의2. 제2호			8. (현행과 같음) 9. 과태료 부과·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	(현행과 같음) 같은 법 제94조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안전과	10. (생략) 11. ~ 14. (생략) 15. 고령지 경작자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5조제3항, 제4항 (생략)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2항		환경안전과	10. (현행과 같음) 11. ~ 14. (현행과 같음) 《삭제》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제4항 (현행과 같음)	
⋮	⋮	⋮	⋮	⋮	⋮	⋮	⋮
도시계획과	1.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법 제16조 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권한 가. ~ 차. (생략) 카. 법 제13조의3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타. (생략) 2. (생략) 3. (생략) 가. ~ 다. (생략) 라. 도서관 마. ~ 차. (생략) 키. 전기공급시설 터. ~ 루.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시장·군수	도시계획과	1.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법 제16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권한 가. ~ 차. (현행과 같음) 카. 법 제13조의4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타.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삭제》 라. ~ 지. (현행 마목부터 치목까지 같음) 척. 전기공급설비 키. ~ 두. (현행 터목부터 루목까지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 마목부터 치목까지와 같음) (현행 터목부터 루목까지와 같음)	시장·군수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소관별	건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	⋮	⋮	⋮	⋮	⋮	⋮	⋮
〈신설〉	〈신설〉	〈신설〉		에너지산업과	1. 에너지융합리화에 관한 사무 중 다음에 관한 권한 가. 에너지다소비업자의 신고 등 나.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검사 등 다. 검사대상기기의 검사면제 등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 신고 등 마. 에너지업무의 보고 및 검사 등 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2.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3. 전력시설물의 공사 감리업자 선정	『에너지융합리화법』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제39조 제5항 같은 법 제39조 제6항, 제7항 같은 법 제40조 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66조 제1항 같은 법 제78조 『전기사업법』 제71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시장·군수
〈신설〉	〈신설〉	〈신설〉		해양수산과	1. 해양수산부의 예산 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관리책임 등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2조』	시장·군수

현행				개정안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 행정과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속기관 내 정보 및 보직 발령권 단, 농업기술원의 본원과 시현장간 및 보건 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 은제의	(생략)	직 속 기 관 장	자치 행정과	1.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직속기관 내 정보권 (단, 농업기술원의 본원과 연구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	(현행과 같음)	직 속 기 관 장
	2.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정보권 단, 농업자원관리원 및 잠사 곤충 사업장은 제외	(생략)	농 업 기술원장		2.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정보권(단, 과장급은 제외)	(현행과 같음)	농 업 기술원장
	3. 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 (승진후보자 부적성권 포함) 단, 농업자원관리원 및 잠사 곤충 사업장은 제외	「지방 공무원법」 제6조 제2항	농 업 기술원장		〈삭제〉		
	4. 연구직공무원의 직속기관내 정보권 단,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	(생략)	직 속 기 관 장		3. 연구사의 원내 정보권 (단,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	(현행과 같음)	보건환경 연구원장
⋮	⋮	⋮	⋮	⋮	⋮	⋮	⋮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치 행정과	1.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사 지도사의 본소와 지소(출장소 등 본소의 하부기관 포함)내의 정보	(생략)	사업소장 및 지소장	자치 행정과	1.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포함)의 사업소내 정보권(본소와 지소 간은 제외)	(현행과 같음)	사업소장
축 산 경 영 과	1. (생략)	(생략)		축 산 경 영 과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	⋮	⋮	⋮	⋮	⋮	⋮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고 우 현

2018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2조에 의한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제24조에서 위임된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경북도서관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3. “경북도서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8번지에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2 장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제4조(대표도서관) 법 제22조에 따라 경북도서관을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책무) 대표도서관은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업무
2. 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지역대표 도서관 업무
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4.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
5. 기타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업무

제7조(의견 제출요청 등) ①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인력) 대표도서관은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9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 도서관정책담당과장, 도 교육청 도서관정책 담당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과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전 협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정책운영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대표도서관의 정책운영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경북도서관 운영

제18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2. 정기 휴관일(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② 경북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도서관의 대청소, 자료점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 7일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출입 및 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자료의 열람 및 관외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도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관외대출은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 이용자들의 공평한 이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출 권수, 대출 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23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경북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시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에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용의 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장은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기한 이후에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관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2. 회의실, 소회의실
3. 기획전시실
4. 세미나실

제26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할 때
2. 이용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기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제27조(허가의 취소) 관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8조(이용료) ① 시설 및 냉난방 이용료와 자료 복사 및 출력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이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
2.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행사와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하는 행사는 50% 감경
3.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 감경

제3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일 7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일 6일전부터 이용일 1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이용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5. 이용자가 이용기간 도중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제3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홍보물 부착)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허가 시설물에 공연, 전시회 등의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관장은 「도서관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도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운영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정책운영담당주무관이 된다.
- ⑪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⑫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 제2조제3호의 경북도서관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면 부여된 도로명 주소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경북도서관 개관 전까지 경상북도 도서관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자료 관외 대출신청서

자료 관외 대출신청서				관리 번호	
대출자료	청구번호	등록번호	저자	자료명	출판사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 화	
직 장				전 화	
위 자료를 대출 받음에 있어 반납기일을 엄수하고 분실 및 파손하였을 때는 본인이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서약하며 관외대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					
				처리자	(인)

[별지 제2호 서식]

시 설 이 용 허 가 신 청 서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전화 FAX	
주 소				
실무책임자	부서 :	직위 :	성명 :	
이 용 목 적				
이 용 인 원	명(남 , 여)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이 용 시 설	☐ 시 설 명 : ※ 강당, 회의실, 소회의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 냉·난방 : ☐ 주차차량 : 대 ☐ 식 사 : 식 ※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위와 같이 귀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경북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시설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 소					
실무책임자	부서 :	직위 :	성명 :		
변경사유					
이용인원	당초 : 명(남 , 여) 변경 : 명(남 , 여)	이용기간	당초 : 년 월 일 ~ 월 일 까지 변경 : 년 월 일 ~ 월 일 까지		
이용시설	/	당 초	변 경		
	시 설 명				
	냉·난방				
	주차차량	대	대		
	식 사	식	식		
	기 타				
※ 구내식당 이용시는 이용자와 식당운영자가 협의 처리함.					
년 월 일 시설을 이용코자 제출한 이용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인) 경북도서관장 귀하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8년 6월 19일

제 출 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 중 “관할지역내”를 “경상북도내”로 함.
- 안 제9조 중 “관할지역내”를 “경상북도내”로 함.
- 안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함.
 -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 안 제31조제1항의 “관외대출”을 “도서관외 대출”로 함.

3. 수정안 : 불임

4.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불임

5.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관할지역내”를 “경상북도내”로 한다.

안 제9조 중 “관할지역내”를 “경상북도내”로 한다.

안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안 제21조제1항의 “관외대출”을 “도서관외 대출”로 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내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 ----- <u>경상북도내</u> ----- ----- ----- -----.	조례의 용어 정비
제9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u>관할지역내</u>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9조(설치) ----- ----- <u>경상북도내</u> ----- ----- ----- ----- ----- -----.	조례의 용어 정비
제20조(출입 및 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u>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u> 2. ~ 4. (생략)	제20조(출입 및 이용 제한) ----- ----- ----- -----. 1. <u>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u> 2. ~ 4. (원안과 같음)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우려되는 문구 삭제

원안	수정안	수정사유
제21조(자료의 열람 및 관외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도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u>관외대출</u>은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21조(자료의 열람 및 도서관외 대출) ① ----- ----- <u>도서관외 대출</u> ----- ----- ----- ----- -----. 1. ~ 4.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	불명확한 용어의 명확화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2조에 의한 경상북도 대표 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제24조에서 위임된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운영,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경북도서관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립된 위원회를 말한다.
3. “경북도서관”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498번지에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표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경상북도내 지식정보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제4조(대표도서관) 법 제22조에 따라 경북도서관을 경상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책무) 대표도서관은 경상북도의 도서관시책 수립 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업무
2. 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한 지역대표 도서관 업무
3.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보존 및 제공 업무
4.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업무 수행
5. 기타 도내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업무

제7조(의견 제출요청 등) ①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표도서관은 시행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련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직·인력) 대표도서관은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 장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9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격차의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도 도서관정책담당과장, 도 교육청 도서관정책담당과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과 도서관의 관종과 도서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심의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대표도서관에서 사전 협의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표도서관의 정책운영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대표도서관의 정책운영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경북도서관 운영

제18조(개관 및 휴관) 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제1호를 제외한 각 호에 해당하는 공휴일

2. 정기 휴관일(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② 경북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도서관의 대청소, 자료점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 7일전에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의 설치) ①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독서 문화향상을 위하여 도서관 안에 이동도서관이나 이동문고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동도서관 및 이동문고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출입 및 이용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출입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2. 음주자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협·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자료의 열람 및 도서관외 대출) ① 도서관 자료는 도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도서관외 대출은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사람 및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자료
 2. 참고자료 및 중요 문헌집
 3. 연속간행물, 신문 등 비치자료
 4. 기타 관장이 관외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 ② 도서관 이용자들의 공평한 이용과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출 권수, 대출 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 도서관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해야 한다.

제23조(기증자료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 관리 하여야 한다.

제24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경북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위탁자료는 본 도서관 소장도서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시 위탁자가 원하는 경우에 관장은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용의 허가) ①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장은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기한 이후에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관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당
2. 회의실, 소회의실
3. 기획전시실
4. 세미나실

제26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이용이 곤란할 때
2. 이용신청자가 당해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3. 기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때

제27조(허가의 취소) 관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8조(이용료) ① 시설 및 냉난방 이용료와 자료 복사 및 출력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는 이용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용료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면제
2. 국가 또는 도가 후원하는 행사와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50% 감정
3. 기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 감정

제30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일 7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일 6일전부터 이용일 1일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이용료에서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

5. 이용자가 이용기간 도중에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해온
경우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수 해당금액을 반환

제31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32조(홍보물 부착) 이용자가 도서관 이용허가 시설물에 공연,
전시회 등의 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3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관장은「도서관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도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서관계·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⑨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⑩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운영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정책운영담당주무관이 된다.
- ⑪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⑫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 제2조제3호의 경북도서관 주소는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면 부여된 도로명 주소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경북도서관 개관 전까지 경상북도 도서관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고 우 현

2018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포항영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란 중 “포항시 북구 죽도로 68번길 16-14”를 “포항시 북구 중앙로212번길 6-7”로, 울빛유치원 위치란 중 “김천시 남면 옥산길 112-11”을 “김천시 남면 옥산길 128”로, 농소유치원 위치란 중 “김천시 율곡동 21”을 “김천시 해오름 1로1길 9”로, 새벗유치원 위치란 중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1”을 “예천군 호명면 양지1길 16”으로 한다.

별표 2의 포항영흥초등학교 위치란 중 “포항시 북구 죽도로68번길 16-14”를 “포항시 북구 중앙로212번길 6-7”로, 양서초등학교 위치란 중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12”를 “포항시 북구 천마로89번길 18-10”으로, 농소초등학교 위치란 중 “김천시 율곡동 21”을 “김천시 해오름1로1길 7”로 한다.

별표 3의 양덕중학교 위치란 중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을

“포항시 북구 장량로241번길 22”로 한다.

별표 4의 경북일고등학교 위치란 중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를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19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칭	위치	명칭	위치
포항영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포항시 북구 죽도로 68번길 16-14	-----	포항시 북구 중앙로 212번길 6-7
울빛유치원	김천시 남면 옥산길 112-11	-----	김천시 남면 옥산길 128
농소유치원	김천시 읍곡동 21	-----	김천시 해오름1로 1길 9
새벗유치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01	-----	예천군 호명면 양지1길 16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칭	위치	명칭	위치
포항영흥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죽도로 68번길 16-14	-----	포항시 북구 중앙로 212번길 6-7
양서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12	-----	포항시 북구 천마로 89번길 18-10
농소초등학교	김천시 읍곡동 21	-----	김천시 해오름1로 1길 7
[별표 3] 중학교		[별표 3] 중학교	
명칭	위치	명칭	위치
양덕중학교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	포항시 북구 장량로 241번길 22
[별표 4] 고등학교		[별표 4] 고등학교	
명칭	위치	명칭	위치
경북일고등학교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1395	-----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193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고 우 현
2018년 6월 26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일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 비	200,000원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 분	액 수
일 비	200,000원
여 비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시·도의회 의원 상당액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별표〕	
구분	액수	구분	액수
일비	110,000원	일비	200,000원
여비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시·도의회 의원 상당액	여비	----- ----- -----

二 규 칙 안 二

-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18. 6. 19.)
-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18. 6. 19.)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고 우 현

2018년 6월 26일

경상북도의회 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표결방법)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의장의 제안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다만, 회의록의 영구 보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또는 기립·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② 의장의 제안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u>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u>	제46조(표결방법) (1항 좌동) ② 의장의 제안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u>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 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기명·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u>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u>다만, 회의록의 영구 보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행정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u>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직무대리 고 우 현
2018년 6월 26일

경상북도의회 규칙 제 호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상북도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의원증 번호”를 “발급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분증에 전자적 신원확인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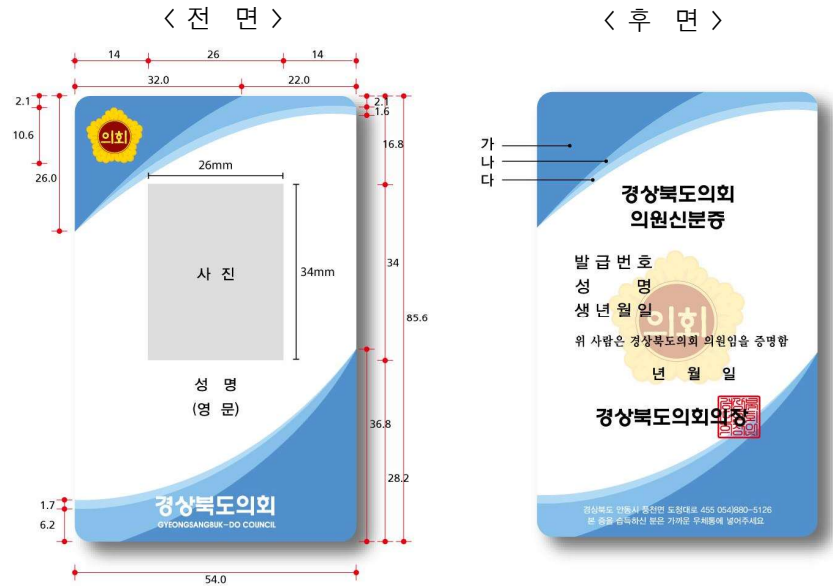
1.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2. 경상북도의회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3. 경상북도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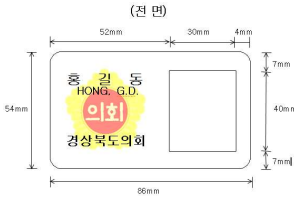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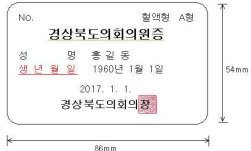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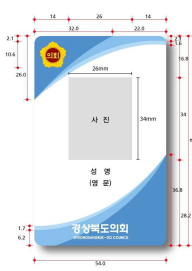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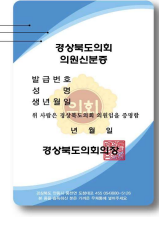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진의 규격 등
 -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 나. 사진인쇄(전면): 염료승화 방식으로 사진 전사함.
 - 다. 신상정보(전·후면): Black(흑색) 전사함.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 가. 국제 표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C(68) M(34) Y(0) K(0)
 - 나. C(49) M(11) Y(0) K(0)
 - 다. C(33) M(3) Y(0) K(0)
4. 인쇄 사양은 재전사 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6. 카드규격 : RF CHIP을 사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신분증에는 <u>의원증 번호</u>,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신분증의 색상은 연한 노란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하고, 전면에 경상북도 의회의원 배지 모형을 얹게 표시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① ----- 발급번호----- ----- ----- ② 신분증에 전자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를 부착하되, 전자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소속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2. 경상북도의회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3. 경상북도청사 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
[별표] (전 면)  (후 면) 	[별표] < 전 면 >  < 후 면 > 

현행	개정안																								
주) 1. 사진규격 등 ① 사진(30mm×40mm) ② 한글성명 ③ 영문성명 : 이름은 처음 글자만 표기(예 : HONG, G.D) 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tr><th>구분</th><th>글자의 크기</th><th>글자의 종류</th></tr><tr><td>한글성명(전면)</td><td>18포인트</td><td>굴림체(진하게)</td></tr><tr><td>영문성명(대문자)</td><td>12포인트</td><td>신명태고딕체</td></tr><tr><td>경상북도의회</td><td>16포인트</td><td>굴림체(진하게)</td></tr><tr><td>발급번호, 혈액형</td><td>12포인트</td><td>굴림체</td></tr><tr><td>경상북도의회의원증</td><td>16포인트</td><td>굴림체(진하게)</td></tr><tr><td>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td><td>12포인트</td><td>굴림체</td></tr><tr><td>경상북도의회의장</td><td>14포인트</td><td>굴림체(진하게)</td></tr></table> 3. 지질은 인쇄용지 190g/m² 또는 P.V.C로 한다. 4. 지질로 인쇄한 경우 P.V.C(투명한 것)로 포장한다.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한글성명(전면)	18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영문성명(대문자)	12포인트	신명태고딕체	경상북도의회	16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번호, 혈액형	12포인트	굴림체	경상북도의회의원증	16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12포인트	굴림체	경상북도의회의장	14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나. 사진인쇄(전면): 염료승화 방식으로 사진 전사함. 다. 신상정보(전·후면): Black(흑색) 전사함.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국제 표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C(68) M(34) Y(0) K(0) 나. C(49) M(11) Y(0) K(0) 다. C(33) M(3) Y(0) K(0) 4. 인쇄 사양은 재전사 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6. 카드규격 : RF CHIP을 사용한다.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한글성명(전면)	18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영문성명(대문자)	12포인트	신명태고딕체																							
경상북도의회	16포인트	굴림체(진하게)																							
발급번호, 혈액형	12포인트	굴림체																							
경상북도의회의원증	16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자	12포인트	굴림체																							
경상북도의회의장	14포인트	굴림체(진하게)																							

의정활동보고서

(제300회 임시회)



2018. 7. 인쇄 / 2018. 7.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054-880-5165

FAX : 054-880-5169



<비매품>